

세무회계저널
제9권 제3호 2008년 9월 pp.35~72
한국세무학회

소규모사업자의 기장 확대방안에 관한 연구

정덕주* · 박성배**

<요 약>

현재 우리나라의 세제 중 가장 근간이 되고 있는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는 신고납세제도이다. 이러한 신고납세제도하에서는 납세자 스스로 세금을 계산하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납세자의 자발적인 협력의지이다. 여기서 납세자의 자발적 협력의지란 세금을 계산할 때 정확한 근거에 의하여 계산함을 말한다. 그러므로 납세자가 세금계산에 있어서 근거과세의 가장 기본이 되는 기장을 통하여 세금을 계산할 때 현재의 신고납세제도가 성공할 수 있고 또한 공평과세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 조세의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먼저 입법적으로 국민의 경제능력에 따라 공평하게 세금을 부과하고 그렇게 거둬들인 세금은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납세자들에게 골고루 그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렇게 공평성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모든 거래와 소득을 투명하게 파악하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 한다. 근로소득자의 경우에는 원천징수제도가 있기 때문에 소득이 투명하게 노출이 되고 있지만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투명하게 소득이 파악되지 않고 있다. 그것은 자영업자들이 대부분 소득파악의 기본이 되는 회계장부를 기록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과세기반을 토대로 수평적, 수직적 공평성을 달성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납세자의 소득을 계산할 수 있는 근거로서 장부기장을 유도하지 않을 수 없다. 본 논문에서는 주로 자영업자의 기장확대 방안을 모색해 봄으로써 조세정책의 개선에 기여할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에서는 주로 소규모 사업자들의 장부기장을 어떻게 하면 확대할 수 있을 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전개하였다. 우선 우리나라의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등 각 세법에 서 규정하는 기장 의무에 대해서 파악하였으며, 기장실태를 살펴보고, 기장확대 방안을 아래와 같이 제시하고자 하였다.

첫째, 소상공인의 경제지원을 통한 확대방안이다. 이를 위하여 소상공인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투명한 경제 환경 조성 및 지하경제를 양성화 시키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둘째, 세무제도적 요인의 정비이다. 즉,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제도를 정비하고 면세대상 축소 및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또한, 소득세법상 기장의무를 확대시키고 납세의식을 고취를 위한 홍보 및 교육프로그램을 실행하는 제도를 제안하였다.

* 서해대학 전산세무회계과 교수, swan@sohae.ac.kr, 063)460-9204, 제1저자

** 경원대학교 경영회계학부 교수, sbpark@kyungwon.ac.kr, 031)750-5217, 제2저자(연결저자)

셋째, 과세표준양성화를 통한 확대방안이다. 이를 위해서는 현금거래 노출을 강화시키는 방안을 모색해 봤고, 적격지출증빙 수취대상을 확대 시킬 것을 제안하였다. 아울러 세금계산서 발행제도의 개선 및 관리를 강화하고자 하였다.

넷째, 기장사업자에 대한 혜택을 통한 확대방안이다. 이를 위해서는 기장세액공제를 확대하고, 무기장가산세를 강화하고자 하였으며, 성실기장신고자에 대한 현실적인 혜택의 부여를 강조하였다. 금융기관에서 거래시에 재무제표 제출을 필수요건화 하는 방안도 모색해 보았다.

다섯째, 세무대리인을 활용한다. 우리나라 소규모영세 사업자들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세무대리인을 통한 기장확대방안에 대해서도 고려해보고자 하였다.

<주제어> 신고납세제도, 기장확대, 소규모사업자, 법인세법,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현재 우리나라의 세제 중 가장 근간이 되고 있는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는 신고납세제도(self-assessment system)이다. 이러한 신고납세제도하에서는 납세자 스스로 세금을 계산하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납세자의 자발적인 협력의지이다. 여기서 납세자의 자발적 협력의지란 세금을 계산할 때 정확한 근거에 의하여 계산함을 말한다. 그러므로 납세자가 세금계산에 있어서 근거과세의 가장 기본이 되는 기장을 통하여 세금을 계산 할 때 현행의 신고납세제도가 성공할 수 있고 또한 공평과세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

공평성은 대단히 모호하며 헌법상의 평등에서부터 경제적인 평등, 사회적인 평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의미를 지닌 개념이다. 이것은 수평적 공평성과 수직적 공평성의 두 가지 측면에서 정리할 수 있다. 조세에 있어서도 첫째는 수평적 공평성이고, 둘째는 수직적 공평성이다.

수평적 공평성은 동일한 위치에 있는 사람에게 동일한 처우를 하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따라서 조세에서의 수평적 공평성은 납세전후를 불문하고 납세자간에 원래의 부의 순위가 인위적으로 바뀌지 않아야 하고 상대적 위치가 변동되지 않아야 한다는 뜻을 함축하고 있다. 그러므로 모든 사업자는 그 규모가 크거나 작거나 간에 동일한 소득이 존재하는 한 동일하게 세금이 부과되어야 하는데 영세사업자라 하여 과세에서 제외 된다면 그것이 바로 수평적 공평성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증거이다. 물론 소규모사업자에 대하여는 보호하여야한다. 왜냐하면 소규모 사업자는 대규모 사업자보다는 경쟁력 면에서 뒤떨어지고 그걸 방지하면 자본주의 사회의 병폐의 하나인 부익부 빈익빈의 현상으로 기업 존립자체가 어려워 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이 수직적 공평성이다. 동일한 소득에 대하여는 다 같이 과세를 당하여야 한다는 것이 수평적 공평이라면 소득이 많은 자에게 적용되는 세율은 소득이 적은 자 보다는 높아야 한다는 것이 수직적 공평이다. 또한 기업의 경쟁에 있어서도 탈세를 일삼는 기업과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납세자간에는 공정한 경쟁이 될 수 없다. 이러한 공정하지 못한 경쟁은 중국적으로 성실한 기업을 도태시키고 불성실한 기업이 유지되는 결과를 초래하여 사회정의가 무너지고 지하경제가 커짐으로 국가 재정의 궁핍을 야기한다. 납세자가 장부를 비치하여 정확한 기록을 유지하고 이에 근거하여 성실한 납세를 한다는 것은 바로 사회의 정의를 세우며 국가의 재정을 튼튼히 하는 데 가장 기본이 된다. 또한 납세자는 가능한 한 세금을 적게 내려고 하는 속성이 있기 때문에 모든 소득에 대하여 예외 없이 적정하게 세금을 부과하려 하는 과세당국과는 근본적으로 상충되는 문제점이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납세자의 소득을 계산할 수 있는 근거로서 장부기장을 유도하지 않을 수 없다. 즉, 기업이 기장을 하여 정확한 근거에 의하여 세금을 신고하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현재 우리나라 소규모 기업(일명 자영업자)의 납세 신고 현황을 보면 기장에 의하지 않고 추계 신고하는 사업자가 전체사업자 수의 46.4 %를 차지하고 있으니 공평과세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기장 확대방안이 반드시 필요하다.

2. 연구의 목적

조세의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먼저 입법적으로 국민의 경제능력에 따라 공평하게 세금을 부과하고 그렇게 거둬들인 세금은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납세자들에게 골고루 그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여야한다.

이렇게 공평성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모든 거래와 소득을 투명하게 파악하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 한다. 근로소득자의 경우에는 원천징수제도가 있기 때문에 소득이 투명하게 노출이 되고 있지만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투명하게 소득이 파악되지 않고 있다. 그것은 자영업자들이 대부분 소득파악의 기본이 되는 회계장부를 기록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과세기반을 토대로 수평적 공평성을 달성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납세자의 소득을 계산할 수 있는 근거로서 장부기장을 유도하지 않을 수 없다. 본 논문에서는 주로 자영업자의 기장확대 방안을 모색해 봄으로써 조세정책의 개선에 기여할 것을 목적으로 한다.

3. 연구의 방법 및 범위

본 논문은 각종 문헌과 논문, 국세청 통계연보, 조세법 편람 등을 참고로 하여 문헌적 연구방법에 의하여 주제에 대한 이론적 토대를 마련하여 기장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본 논문의 구성은 제1장 서론에서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연구의 방법 및 범위를 설명하고 제2장에서는 선행연구 및 근거과세확대를 위한 법적제도를 설명하고 제3장에서는 우리나라의 기장실태 현황을 살펴보고 제4장에서는 구체적인 기장확대방안을 설명하였고 제5장에서는 결론을 내리면서 이 연구의 한계점을 설명하였다.

II. 선행연구 및 근거과세 확대를 위한 법적 제도

1. 기장확대방안에 관한 선행연구

기장확대방안에 관한 연구는 그 중요성에 비한다면 그렇게 많은 연구가 이루어진 바가 없다.

이우영(2003)은 “자영업자의 과표양성화를 위한 기장확대방안 연구”에서 기장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방안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임정렬(2004)은 “자영업자의 과표양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에서 과세표준양성화를 제도적 측면에서 첫째, 조세행정 체계의 개선, 둘째, 부가가치세의 세무관리 강화를 통한 간이과세자의 축소 및 폐지를 비롯한 부가가치세의 개편과 셋째, 특별소비세 중에서 과세 유흥장소의 성실신고 유도를 통하여 세제면의 과세 기반을 확충하는 방향으로 개편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김재진(2003)은 “자영업자의 과표양성화에 관한 연구”라는 정책보고서에서 자영업자의 과세표준양성화를 위하여 세제분야와 세정분야를 나누어서 설명하고 있다.

세제측면에서 정책방향의 큰 틀은 기본적으로 자영업자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종합소득세(Global Income Tax)와 부가가치세의 과세기반을 확충하기위해, 대도시 간이과세배제지역 범위의 확대 및 세무관리 강화를 통한 간이과세자(Simplified Tax Payer) 비율의 축소를 제안하였고 부가가치세의 면세범위의 축소를 통한 과세범위의 확대와 아울러 금융소득종합과세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종합과세 기준금액의 단계적 인하를 포함한 근본적인 대책마련을 주장하였다.

세정측면에서는 상거래에서 현금거래의 비율을 최소화하고 이차적으로는 세무대리인의 윤리 및 책임강화를 통해 자영업자들이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과세당국과 납세자간의 중간자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야 하며 마지막으로 혐의거래보고(Suspicious Transaction Report)제도와 고액현금거래보고(Currency Transaction Report)제도를 통하여 일부 계획적이고 지능적으로 이루어지는 탈세행위를 방지해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다.

이점용(2005)은 “부가가치세제의 납세자 인식에 관한 연구”에서 간이과세제도의 문제점을 공평성의 측면에서 분석하고 이에 따른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기존의 논문들의 내용을 살펴보면 과세표준을 양성화하게 되면 기장의무자들이 증가하기 때문에 기장확대를 위해서는 과세표준을 양성화해야한다는 것이 주된 논리이다.

본 연구에서는 과세표준 양성화를 통하여 기장의무자를 증가시키는 대안을 제시하였으며, 우리나라 소규모 영세사업자들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하여 세무대리인을 통한 기장확대 방안에 대하여도 고려해 보고자 하였다.

2. 근거과세를 위한 법적제도

현행 세법 상 기장관련 규정은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등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 법령을 토대로 근거과세를 위한 법적제도를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가. 신고납부제도

신고납부제도는 과세요건의 충족에 의하여 성립한 조세채무를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조사, 확인, 계산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함으로써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확정되는 것이다(최명근, 2006, p378). 그러므로 스스로 신고를 할 때에 근거 없이 적당히 신고를 한다면 바로 근거에 의한 신고가 되지 않고 허위신고가 되며 이때 정부에서 경정하는 절차가 남아 있기는 하지만 사업자수는 많고 세무공무원의 숫자는 적기 때문에 허위 기재하여 신고한 납세자에 대하여 올바른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보장이 없다. 이에 신고납세제도는 납세자 스스로 자기계산에 의하여 정직하게 신고하는 것을 전제로 한 제도이기 때문에 납세자의 고도한 납세윤리의식을 필요로 한다.

나. 세금계산서제도

세금계산서(Tax Invoice)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가 이를 공급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그 거래 내용과 거래징수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증서를 말한다.¹⁾

이는 전단계세액공제법을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부가가치가 간접적으로 산정되고 거래징수 방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액을 전가시키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세금계산서제도의 기능이 정착되면 근거과세 확립이 실현되고 거래의 양성화를 기대할 수 있게 된다.

다. 신용카드제도

신용카드란 현금과 수표를 대신하여 재화나 용역을 구매할 수 있는 제3의 화폐의 역할을 한다. 따라서 신용카드 거래는 현금결제에 확실한 대상에게 신용을 부여하고 현금 없이 상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 보다 많은 상품을 판매하고자 하는 현대적인 마케팅수단이라는 점에도 그 의의를 부여할 수 있다.

신용카드사용은 현금유동성을 축소하고 거래를 양성화시켜 신용사회를 정착시킴으로써 무현금사회를 구현하는 수단으로 발전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1) 부가가치세법은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거래시기(공급시기)에 법정상항을 기재한 계산서(세금계산서) 등을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부법 16①).

라. 현금영수증제도

현금영수증제도는 신용카드(또는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근로자의 현금거래내역이 판매업소·음식점(가맹점)등의 단말기를 통해 국세청에 통보되도록 하고, 근로자는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이용실적확인서로 연말정산시 혜택을 받는 제도이다.²⁾

2003년 12월 정부가 현금영수증제도를 도입한 이유는 2002년 총 민간소비지출 중 현금사용비율이 51.5%의 높은 비중으로 나타난 데다, 거래내용이 잘 나타나지 않는 자영업자 등의 현금거래를 자동적으로 노출되도록 하여 과세형평성을 제고하고 근로자의 세부담 경감을 위해 현금영수증제도와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를 도입하게 되었다(김완일, 2005, p332-336).

〈표 1〉 신용카드 이용금액 및 민간소비지출 현황

(단위 : 십억 원, %)

연도	1994	2000	2002	2003	2004	2005	2006
신용카드	18,875	79,592	174,023	170,529	167,096	190,469	214,820
민간소비지출	175,969	312,300	381,063	389,177	400,696	424,630	453,870
비율	10.7	25.5	45.7	43.8	41.7	45.3	47.3

* 한국여신금융협회 통계자료(신용카드이용금액은 현금서비스 및 기업구매카드실적 제외)

마. 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제도

사업자는 자기의 소득을 스스로 계산할 수 있도록 장부를 기장하고 이를 기초로 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그러나 장부를 기장하지 않는 사업자의 소득을 계산하여 소득세를 과세하기 위하여 1955년부터 표준소득률제도를 도입하여 운용하여오다 2002년 귀속 소득세부터 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다.

그동안 표준소득률제도는 간편하게 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도록 하여 납세자에게 신고편의를 제공하고, 다수의 무기장 사업자의 납세의무를 일시에 이행시킬 수 있게 하여 행정능률을 제고하는 등 긍정적인 역할도 하였으나 표준소득률은 사업자가 장부를 기장하지 않아도 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게 함으로써 기장제도 확립을 저해하고, 표준소득율에 의해 세금을 납부함으로써 세부담이 불공평해 지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었지만 그동안 45년간 사용해온 표준소득률을 일시에 폐지하는 경우에는 소득세 신고사업자의 약 60%에 달하는 무기장 사업자의 소득세 신고불편과 행정부담 등 큰 혼란이 예상되었기 때문에 그 대안으로 기준경비율 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게 되었다.

소득세 신고사업자 121만 명 중 72만 명(59.2%)이 장부를 기장하지 않고 있는 현실을 무시하고 일

2) 현금영수증제도 시행 추진현황 (2005), 국세청 보도자료, 4. 5.

시에 표준소득률을 폐지하고 모두 기장을 하도록 유도하는 데는 무리가 따르므로 표준소득률의 폐지 대안으로 기준경비율 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다.

III. 기장실태 현황

1. 소득세신고 인원을 통한 기장실태 현황

우리나라의 소득세 신고는 종전에는 부과과세제도를 택하여 오다 1995년 귀속 소득 분부터 신고 납부제도로 전환하였다. 신고납부제도 하에서는 자기 스스로 세액을 계산하여 정부에 신고함으로써 일단은 신고 시점에서 조세채무를 확정하고 정부에서는 그 신고가 잘되었는가의 여부를 후일 서면을 분석하여 신고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경정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여기에는 문제가 있다. 그것은 소규모사업자들에게는 장부 기장을 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1년 귀속분 까지 무기장사업자에 대하여는 표준소득율을 적용하여 사업자의 소득을 추계하여 세액을 계산 하였고 개정 후인 2002년 귀속 분 부터는 기준경비율제도가 적용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정부부와 추계과세로 운영하여 오고 있는 실정이다.

〈표 2〉 연도별 종합소득세 납세인원

(단위 : 명, %)

구 분 \ 귀속연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1. 납세인원	3,480,371	3,808,476	4,160,795	4,227,354	4,363,257	4,369,881
① 과세미달추정 인원	1,849,585	2,001,757	2,115,269	2,059,254	2,071,336	1,954,779
② 확정신고 대상 인원	1,630,786	1,806,719	2,045,526	2,168,100	2,291,921	2,415,102
과세인원비율(②/1)	46.9	47.4	49.2	51.3	52.5	55.3
2. 확정신고 인원	1,616,244	1,782,369	2,010,363	2,114,527	2,235,905	2,279,497
① 장부증빙에 의한 신고인원	679,536	790,224	918,803	1,018,068	1,143,900	1,230,024
근거과세인원비율 [①/(①+②)]	44.3	45.4	47.3	50.1	53.6	53.9
② 추계신고인원	856,124	950,665	1,023,137	1,012,943	989,294	965,662
추계인원비율 [②/(①+②)비율]	55.7	54.6	52.7	49.9	46.4	42.4
③ 사업소득·부동산소득이외의 종합소득자	80,584	41,480	68,423	83,516	102,711	83,811
비사업자인원비율(③/2)	5.0	2.3	3.4	3.9	4.6	3.7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주1) 납세인원에는 분리과세소득자이거나, 원천징수대상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제외됨

2) 확정신고인원에는 추계신고자로서 과세미달자는 제외된 인원임

위의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최근 5년간 근거과세 신고 인원의 비율은 2000년 44.3%에서 2004년 53.6%로 우리나라의 장부·증빙에 의한 근거과세신고 인원은 점차적으로 증가 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추계과세인원의 비율은 점점 감소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비록 추계과세의 인원은 감소하고 있다곤 하지만 2004년 말 현재 추계과세인원의 비율은 46.4%로 거의 과반수에 가까운 비율이 추계과세를 한다는 것은 그만큼 기장확대를 장려해야할 이유가 크다는 것이다.

2. 소득세 신고유형 별로 본 기장실태 현황

<표 3>는 종합소득세 신고 유형별로 본 기장실태 현황이다. 상기 <표 2>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추계과세 인원은 전체 신고대상 인원의 46.4%를 차지하였었다. 그러나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추계인원에 간편 장부에 의한 신고자를 합하면 무려 67.6%가 무기장사업자라고 볼 수 있다. 이렇게 무기장 사업자가 거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현실에서 공평과세란 요원한 이야기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어떻게 하든지 기장사업자를 늘리는 것이 공평과세를 이루는 하나의 지름길이라 할 수 있다.

<표 3> 종합소득세신고유형별 현황(2004 귀속)

(단위 : 명, 백만원, %)

신고유형	구 분	신 고	인 원	결 정	세 액
			구성비		구성비
합	계	2,235,905	100.0	6,943,835	100.0
장부·증빙에 의한 신고		1,143,900	51.2	4,833,127	69.6
외부조정계산서 첨부		542,249	24.3	4,292,873	61.8
자기조정계산서 첨부		77,714	3.5	146,419	2.1
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첨부		523,937	23.4	393,835	5.7
추계신고		989,294	44.2	1,101,128	15.9
비사업자		102,711	4.6	1,009,580	14.5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2005.

3. 부가가치세 신고를 통한 기장실태 추정

간이과세제도 문제점에 대한 기존 연구에서는 간이과세제도를 폐지하자는 의견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것은 간이과세제도가 세금계산서의 흐름을 왜곡시켜 근거과세를 저해하는 요인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간이과세제도를 폐지하였을 경우 세금계산서 수수 및 장부기장 등으로 인해 선의의 영세사업자들의 경우 납세협력비용 및 세부담이 급증하는 문제가 있어 일괄적인 폐지는 어려움이 있다. 그렇다면 현재의 문제점을 개선하면서 점진적으로 폐지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다.

가. 간이과세자의 현황

아래의 <표 4> 납세자별 현황에서 간이과세자의 숫자 증·감 추이를 보면 2003년에서부터 2005년 까지 44.4%, 41.8%, 38.9%로 매년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과세표준 현황에서도 전체과세표준 중에서 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이 차지하는 비율이, 1.3%, 1.1%, 1.0%로 점점 낮아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표 4> 납세자별 현황

구 분	인원(명)						과세표준(억원)					
	2003		2004		2005		2003		2004		2005	
법 인	359,154	9	372,041	9.4	400,398	9.7	15,565,243	82.7	17,812,751	83.7	20,344,469	83.8
개인 일반	1,861,707	46.6	1,924,877	48.8	2,117,551	51.4	3,008,677	16	3,228,274	15.2	3,684,581	15.2
간이 과세자	1,773,804	44.4	1,645,329	41.8	1,603,663	38.9	252,766	1.3	239,833	1.1	241,398	1.0
합계	3,994,665	100	3,942,247	100	4,121,612	100	18,826,686	100	21,280,858	100	24,270,448	100

국세청, 「국세 통계연보」, 2004-2006.

이는 신용카드활성화로 인하여 과세표준의 양성화 비율이 증가함으로써 간이과세자의 비율이 낮아지는 것으로 바람직한 현상이라 볼 수 있다.

그러나 아직도 간이과세자의 숫자가 2004년 기준 41.8%라는 것은 납세자 중 거의 절반이 세금계산서에 의한 근거과세를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간이과세자의 비율을 낮추는 것이 바로 기장확대의 방향이 라고 생각한다.

나. 소액부징수자(납부면제자)의 현황

아래의 <표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간이과세자 총인원 1,645,329명 중 과세면제자는 1,437,227명으로 면제 비율은 87.3 %나 된다. 이 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간이과세자의 대부분은 세금을 안내기 때문에 기장도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원래 간이과세제도는 소규모 영세사업자의 세부담 완화와 조세징수비용의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도입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간이과세제도는 본래의 취지와는 달리 조세의 회피수단으로 이용되고 있기 때문에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것이다.

〈표 5〉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납부면제 현황(2004년 2기)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합 계
총과세인원	1,924,877	1,645,329	3,570,206
면제인원(소액부징수자)	588,172	1,437,227	2,025,399
면제자 비율	30.6%	87.3%	56.7%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2005.

IV. 기장확대방안

제4장에서는 구체적으로 기장확대 방안을 살펴보기로 한다. 기장확대 방안은 1. 경제환경적 요인의 정비 2. 세무제도적 요인의 정비 3. 수입금액 양성화 요인 정비 4. 기장이익 요인(무기장 불이익 요인)정비 등으로 나누어 설명하기로 한다.

1. 경제 환경적 요인의 정비

가. 소상공인의 의식교육

규모가 작은 소기업, 즉 소상공인의 세무관리를 통하여 간접적인 기장확대 방안을 논하고자 한다. 소상공인의 세무관리는 의식에 대한 교육과 제도적인 장치의 마련으로 나누어 생각해보고자 한다.

(1) 창업 초기단계에서 납세의식에 대한 교육

소상공인의 창업에 대하여는 각종의 단체에서 자금지원과 교육(기술지원 포함)지원을 하고 있다. 그러나 아무리 창업이 많이 된다고 하더라도 사업주가 기장을 해야 되겠다는 의지가 없는 한 공평과세는 어렵게 된다. 그러므로 창업단계에서부터 사업주에 대한 납세의식고취에 대한 교육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겠다.

(2) 제도적인 장치마련

영세사업자의 창업 초기 단계에서는 그 사업의 흥망이 달려 있기 때문에 납세에 대한 의식이 클 수가 없다. 그러므로 사회제도적으로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자연히 과세소득이 양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러한 제도의 하나로 사업장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 사업자는 의무적으로 신용카드거래의 설치를 의무화하는 것이다. 현재 신용카드의 민간소비지출의 비율을 보면 다음과 같다.

〈표 6〉 민간소비지출대비 신용카드 이용금액 추이³⁾

(단위 : 천 억원, %)

구 분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전체 이용금액	908	2,249 (147.8)	4,434 (97.1)	6,229 (40.5)	4,805 (-22.9)	3,578 (-25.5)	3,638 (1.7)	3,683 (1.2)
이용금액(A) ^{주1)}	426	779 (82.7)	1,342 (72.4)	1,740 (29.7)	1,705 (-2.0)	1,671 (-2.0)	1,905 (14.)	2,148 (12.8)
민간소비지출(B)	2,749	3,123	3,434	3,811	3,892	4,007	4,246	4,539
A/B	15.5	24.9	39.1	45.7	43.9	41.7	44.8	47.3

주1) 현금서비스 및 기업구매카드 실적 제외(기업구매 카드제도 : 2000년부터 도입)

2) ()는 전년대비 증가율임.

여신금융협회, 「신용카드업계현황」 2006. 3

그동안 신용카드사용 활성화 등으로 과세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함으로써 세원이 상당 수준 양성화되어 1999년 민간소비지출 중 신용카드 사용비율이 1999년 15.5%에서 2002년 45.7%까지 확대 되었으나 2003년 이후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민간소비지출의 40%대 수준에 머물고 있는 형편이다 이것은 그만큼 현금거래의 비중이 많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현금거래에 대한 과세인프라가 필요한 것이다 그러므로 정부에서는 현금거래의 투명화를 위하여 현금영수증제도를 도입하게 되는데 이러한 사회적 제도를 통하여 세원이 자동적으로 노출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

나. 투명한 경제 환경조성과 지하경제의 양성화

(1) 투명한 경제환경 조성

거래가 발생하면 사회제도적으로 누락이 되지 않도록 하는 사회적 시스템이 바로 투명한 경제환경이라 말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사회적 시스템으로 도입된 것이 세금계산서제도, 신용카드제, 현금영수증제도 등 여러 가지 제도가 있지만 이러한 제도들이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국민들의 의식이 아닌가 싶다. 아무리 좋은 제도가 마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이용하는 당사자인 국민이 그러한 납세의식이 없을 경우에는 이러한 제도가 무의미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투명한 경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사회적인 제도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국민들의 납세의식이 중요한 것이다.

3) 여신금융협회, 「신용카드 업계현황」, 2006. 3.

(2) 지하경제의 양성화

(가) 지하경제의 규모 추정

국민이 부담하는 조세는 국민의 능력과 이익의 원칙에 의해서 부담되어야 하는데 지하경제는 이러한 조세부담을 회피하기 때문에 조세의 형평에 어긋난다. 수익이나 소득이 있어 당연히 부담해야 하는 세금을 내지 않는 지하경제를 찾아내어 과세하는 것은 재정수입의 확보와 과세형평을 기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지하경제활동은 합법, 불법적인 경제활동이 국민총생산(GNP)의 공식적인 계산에 나타나지 않는 경제활동을 말하는 것으로 특히 우리나라의 지하경제가 타국과 큰 차이가 나는 것은 다른 나라는 지하경제활동이 은밀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에 우리나라의 지하경제 활동은 기업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대표적인 사례가 거래시 세금계산서가 수수되지 않는 무자료 시장을 들 수 있는데 여기서는 기장과 관련되는 우리나라의 무자료 실태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표 7〉 조세범 고발 실적

	합 계			조세포탈범			자료상		
	소계	법인	개인	소계	법인	개인	소계	법인	개인
2001	1,267	**	**	102	**	**	1,065	**	**
2002	1,224	**	**	95	**	**	1,129	**	**
2003	2,272	**	**	164	**	**	2,108	**	**
2004	4,006	**	**	308	**	**	3,698	**	**
2005	4,002	2,117	1,885	277	160	117	3,725	1,957	1,768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2006

주1) *2005년 중에 고발한 실적을 기준으로 작성

주2) **란은 통계생산을 하지 않음

위 <표 7>은 조세범 고발 실적이다. 이 중 자료상의 고발실적을 보면 2001년 1,065건으로부터 2005년 3,725건으로 무려 3배 이상이 증가하고 있다. 이것은 실적도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중간수수료를 챙기고 도주한다든지 합법적으로 폐업하는 형태를 취하여 법망을 빠져나가고 있는 불법 거래자들이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나) 무자료거래규모 추정

부가가치세는 현재 전체 세수의 1/3을 점유하고 있는 국세 중 가장 중요한 세목이라 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가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것과 함께 소득세제와도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어 부가가치세 탈루가 바로 소득세 탈루로 이어진다. 부가가치세 탈루는 일반과세자의 경우 매출세액의 과소보고와 매입세액의 과대보고에 의해서 이루어지고⁴⁾, 중전의 과세특례자의 경우 매출액에 대

해 2% 또는 3.5%의 세율이 적용되므로 매출규모의 과소보고에 의해 탈루가 이루어지고 현재의 간이과세자의 경우도 매출액에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곱한 금액에 10%의 세율이 적용되므로 매출규모의 과소보고에 의해 탈루가 이루어진다.

특히 이들 특례과세자의 경우 세금계산서의 제출의무가 없으므로 부가가치세 탈루의 온상이 되어 왔다. 부가가치세의 탈루는 대부분 무자료거래를 통해 이루어진다. 1993년 8월 금융실명제 실시 이후 거래질서 정상화를 위한 정부의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무자료의 거래가 여전히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다) 만연된 가공자료거래

부가가치세제의 근간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 그 증거로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도록 하는 데 있다.

그러나 세금계산서 수수없이 거래를 하는 경우는 공급자는 매출세액을 납부하지 않게 되지만 공급받는 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않으면 공급받는 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게 되므로 세금계산서를 반드시 교부받을 것으로 보인다.⁵⁾ 그러나 매입자 역시 매입한 재화 등을 세금계산서 없이 공급하여 자신의 거래실적을 축소시켜 세금부담을 줄이거나 매입시 부담하지 않은 세금만큼 낮은 가격으로 취득하기 때문에, 세금계산서 수수없이 거래하는 것은 공급받는 자에게도 역시 세부담 면에서 이익이 된다.

자료상은 재화나 용역의 실물거래 없이 자신의 명의로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사업자에게 수수료를 받고 팔고, 이를 구입한 사업자는 자신이 납부할 부가가치세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한다. 즉 자료상은 아무런 실물거래 없이 수수료를 얻고 사업자는 지불한 수수료보다 더 많은 세금을 공제받는다. 또한 사업자는 이러한 거래 없는 허위 매입금액에 따라 가공원가 계상 및 감가상각비등 비용계상으로 사업소득세, 법인세 등을 포탈한다.

자료상에 대한 고발실적이 매년 증가추세에 있다. 2001년부터 급격히 증가하기 시작하여 2005년 말 현재 3,725건으로 2001년에 비해 3.5배나 증가하였다. 이렇게 자료상에 대한 고발건수가 크게 늘어난 것은 과세당국이 자료상 근절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써 행정력을 집중한 데 기인하였다고 볼 수 있으나 세부담을 줄이려는 사업자들이 다액의 가공자료를 수취한 것이 더 큰 이유라고 해야 것이다. 가공자료의 거래는 시간이 지날수록 계속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가공자료의 수수행위는 조세행정을 침식하고 지하경제를 형성하는 대표적인 불법·사기행위라 할 수 있다.

가공자료에 대한 수요를 차단하기 위하여 실물거래 없이 단 한 건이라도 고의로 가공자료를 수취한 사업자에 대하여는 반드시 당해 연도에 대한 부가가치세·소득세(법인세)를 조사하도록 과세당국의 내부규정에 명문화하여 시행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다.

4) 유일호(1994)는 소득-지출 접근법을 이용하여 부가가치세 탈루규모를 추정한 결과 부가가치세의 탈세규모는 1987, 1988년 모두 7~11% 범위에 있을 것으로 추정하였다.

5) 부가가치세제 도입시의 도입 타당성에 대한 홍보 논리중의 하나이다.

(라) 지하경제의 양성화 대책

지하경제의 유형에 의한 불법거래는 본 논문에서는 논외로 하기로 한다. 우리나라 기장확대와와는 좀 거리가 있기 때문이다. 기장과 관련된 지하경제의 유형으로 부가가치세법상의 세금계산서 발행 문제와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탈루문제, 무자료거래에 의한 부가가치세 질서범에 대한 양성화방안이 중요 문제라고 하겠다. 그러나 이 중에서 부가가치세에 대한 세금계산서 문제와 간이과세자의 세금 탈루문제는 세무제도적인 문제에서 다루기로 하고 여기서는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남발하는 자료상에 대한 대처방안을 논하기로 한다.

① 무자료거래가 발생하는 원인

㉔ 사업자등록단계

모든 사업자는 사업을 시작할 때 반드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위장사업을 하는 자도 반드시 거치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 단계에서 막을 수 있는가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다만, 명의 위장사업 또는 신용카드 위장가맹 혐의가 있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기 전에 현지 확인을 실시하여 실질사업자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교부한다.

사업자 등록 단계에서 위장사업 여부를 가리기는 쉽지 않다고 본다. 그러나 위장사업자의 대부분은 도·소매업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도·소매업의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해 줄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서의 사무실 현황을 꼭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㉕ 사업활동 단계

위장사업자들이 매입세금계산서와 매출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발행하였을 때 상대방이 세금계산서를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내에 신고를 행하였을 경우에는 위장여부를 가릴 수가 없다. 그러므로 국세청에서는 세금계산서를 분석하여 거래내역이 올바른 거래인가를 파악하여 위장여부를 판단한다고 할 수 있다. 여기서도 자료를 받는 자와 공급하는 자가 똑같이 보고를 하게 되면 위장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다.

이를 국세청에서는 전산에 의해서 분석하는 경우 외에 일반인들의 고발에 의해 발견하는 사례도 자주 발생한다. 이러한 시민의식의 향상이 지하경제의 일부분을 막을 수 있는 것이라 본다. 특히 위장사업자들의 생각은 일종의 범죄이기 때문에 이것도 국민의 의식수준의 향상에 맡길 수밖에 없는 것이다. 위장사업자들이 적발 되었을 경우엔 처벌이 기다리고 있다. 즉,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세금계산서 교부 의무 위반 등의 규정 중 제(4)항의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로 되어 있다.

그러나 실제 국세청에서 자료상으로 확정된 후 검찰에 고발한 경우 대체로 처벌이 경미한 것이 사실이다. 자료상의 특성상 경제적 무능력자를 앞세우는 경우가 많고 일정한 거소나 주소지가 없는 자를 내세우기 때문에 신병을 확보하기가 어렵고 경제범으로서 초범인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기소중지 또는 기소 유예처리를 하거나 또 기소를 하였다 하더라도 집행유예나 벌금형 등 가벼운

처벌로 끝나기 때문에 자료상 행위자에 대하여는 실제 인물을 찾아서 경제법 중에서도 가장 엄한 벌로 다스릴 필요가 있다.

2. 세무제도적요인의 정비

가.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제도의 정비

현재 간이과세자는 전체 부가가치세 사업자의 40%인 155만 명에 이르며 이들이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는 전체 부가세 세수의 0.4%에 불과한 1100억원 수준이며 세금계산서 수수를 전제로 부가가치세제도가 유지되는 만큼, 간이과세제도는 부가가치세제도의 블랙홀이다.

실질적으로 외형 4800만원을 넘겨 간이과세를 졸업하는 사업자가 늘고 있다. 이에 따라 "간이과세제도를 세법 개정 등을 통해 인위적으로 폐지하기보다는 과표양성화 등으로 졸업자를 늘리는 방식으로 자연적으로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겠다.⁶⁾

〈표 8〉 년도별 납세자별 인원 현황

(단위 : 명)

	인 원					
	2002		2003		2004	
법 인	345,292	8.7	359,154	9	372,041	9.4
개인 일반	1,774,268	44.8	1,861,707	46.6	1,924,877	48.8
간이과세자	1,843,894	46.5	1,773,804	44.4	1,645,329	41.8
합 계	3,963,454	100	3,994,665	100	3,942,247	100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2004-2006.

<표 8>의 납세자별 현황에서 보듯 간이과세자의 숫자 증·감 추이를 보면 2002년에서부터 2004년 까지 46.5%, 44.4%, 41.8로 매년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신용카드활성화로 인하여 과세표준의 양성화 비율이 증가함으로서 간이과세자의 비율이 낮아지는 것으로 바람직한 현상이라 볼 수 있다.

그러나 아직도 간이과세자의 숫자가 2004년 기준 41.8%라는 것은 납세자중 거의 절반이 세금계산서에 의한 근거과세를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간이과세자의 비율을 낮추는 것이 바로 기장확대의 방향이 아닌가 생각한다.

6) 권혁세 “간이과세자 인위적 폐지 옳지 않다.” 조세일보 2007.1.22.

〈표 9〉 연도별 납세자별 과세표준 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인원(명)					
	2003		2004		2005	
법 인	359,154	9	372,041	9.4	400,398	9.7
개인 일반	1,861,707	46.6	1,924,877	48.8	2,117,551	51.4
간이과세자	1,773,804	44.4	1,645,329	41.8	1,603,663	38.9
합 계	3,994,665	100	3,942,247	100	4,121,612	100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2004—2006.

위 <표 9>의 도표는 연도별 납세자별 과세표준의 변화도이다 전체 납세자 중 간이과세자가 차지하는 연 도별 과세표준의 비율은 2002년도 1.6%, 2003년도 1.3%, 2004년도 1.1%로 전체 과세표준 중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내 외 밖엔 되지 않는다. 즉 간이과세자의 숫자는 전체납세자의 41.8%인데 과세표준은 1% 내외라는 것은 정부의 말대로 세수가 미미하고 일반과세자로 전환함으로서 드는 비용이 커지는 현실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현금 영수증제도의 활성화를 통하여 외형을 신장시켜 일반과세자로 자연스럽게 전환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이 일면 타당해 보이나 여기에는 모순이 있다. 그것은 세수가 미미하다는 대목이다. 세수가 적다는 것은 간이과세자가 그만큼 적게 신고한다는 것이지 그것이 진실된 신고라는 확증이 없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개인사업자의 2004년도 세무조사실적은 아래 <표 12>에서 보면 전체 신고 인원 2,114,527명 중 4,370명으로 0.21%에 지나지 않는다. 이렇게 세무조사 실적이 저조한 상황에서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과세표준 구간인 연간 매출액 4,800만원 이상의 매출자가 간이과세자 기준인 4,800만원 이하로 신고를 하여도 발견될 수 있는 확률은 0.21%에 지나지 않으니 연간 매출액 1억원의 매출사업자가 4,800만원 이하로 신고한다 해도 대부분 발견되지 않고 그냥 지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다. 또한 세무조사의 대상이 되는 업체는 일단 신고가 이루어진 업체이지 납부 면제자는 조사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아무리 탈세를 하여도 발견될 수 있는 확률은 거의 없다는 것이다.

〈표 10〉 개인사업자 세무조사비율

구 분	확정신고인원	조사인원	비 율
2005년	2,279,497 ^{주1)}	3,989	0.17%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2006

주1) 확정신고 인원은 2005년 신고 인원임

다음 <표 11>는 개인사업자 세무조사실적표이다. <표 11>에서 보는 바와 같이 1인당 평균부과액은 5천7백4십6만 원이고 간편장부의무자라고 볼 수 있는 수입금액 1억 원 이하의 1인당 부과액은

평균 2천6백3십5만 원이다. 소득세를 2천6백3십5만 원을 추징했다면 외형으로 환산하여 1인당 3천만원 내지 4천만원으로 이는 간이과세자에서 일반사업자로 전환할 수 있는 금액으로 판단할 수 있다. <표 11>에서 세무조사 받은 개인 사업자는 모두 일반사업자로 전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간이과세자가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았거나 교부한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보관한 때에는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기장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는 조항은 간이과세자를 지나치게 보호하는 규정으로 볼 수 있으며 형평에도 어긋나므로 간이과세자도 자료만 보관하고 있으면 기장으로 볼 것이 아니라 실제 기록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 합당하다 할 것이다.

<표 11> 수입금액계급별 개인사업자 조사실적

(단위 : 명, 백만원)

구 분	조사인원	부과금액	1인당 부과액
합 계	3,989	229,786	57.6
1억미만	136	3,584	26.35
1억이상 - 5억미만	1,684	31,468	18.69
5억이상 - 10억미만	1,185	38,366	32.38
10억이상	800	77,353	96.69
50억 이상	184	79,015	429

국세청, 「국세 통계연보」, 2006

주) 2005년도 중에 조사완료한 실적을 기준으로 작성함.

부과세액은 소득세와 기타세를 포함한 것임.

아래의 <표 12>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간이과세자 총인원 1,603,663명 중 과세면제자는 1,329,128명으로 면제 비율은 82.9%나 된다.

<표 12>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납부면제 현황(2005년 2기)

	일반과세자 ^{주1)}	간이과세자 ^{주2)}	합계
총과세인원	2,117,551	1,603,663	3,721,214
면제인원(소액부징수자) ^{주3)}	1,006,779	1,329,128	1,435,068
면제자 비율	47.5%	82.9%	38.56%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2006 재작성

주1) 일반사업자 부가가치세신고현황 9-3중 발취

주2) 업태별 납부의무면제자 현황 9-16 중 발취

주3) 면제 인원은 1과세기간이 1,200만원 미만인 자를 말함

이 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간이과세자의 대부분은 세금을 안내기 때문에 기장도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원래 간이과세제도는 소규모 영세사업자의 세부담 완화와 조세징수비용의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도입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간이과세제도는 본래의 취지와는 달리 조세의 회피수단으로 이용되고 있기 때문에 이를 개선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제안해본다.

첫째, 간이사업자에게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게 한다.

둘째, 우선 간이과세 적용대상자를 축소하고, 장기적으로는 간이과세를 폐지하도록 한다.

셋째, 과세유형 전환 시 세부담의 급격한 증가로 인한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한시적인 세부담 경감책을 두는 것이 필요하다.

나. 부가가치세법상 면세대상 축소 및 관리 강화

(1) 면세제도의 목적

면세제도의 목적은 부가가치세의 단점으로 지적되는 세부담의 역진성을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 특히 기초생활필품에 대하여 면세제도를 둠으로써 최종소비자의 세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면세제도는 부가가치세의 경제적 중립성을 저해하는 요인이기 때문에 기초생활필수품, 국민후생, 문화·금융들로 적용범위를 최소화하고 있다.

(2) 면세사업자인원 및 수입금액현황

아래의 <표 13>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5년을 기준으로 과세표준 2천4백만원 이하가 전체 1,079,025명 중 588,473명으로 54.5%를 차지하고 있다.

<표 13> 면세사업자 인원 및 수입금액 현황^{주1)}

(단위 : 백만원)

	신고대상자 ^{주2)}		자료과세자 ^{주3)}	
	납세자수	수입금액	납세자수	수입금액
2001	726,422	72,188,065	148,673	7,423,833
2002	820,336	92,046,307	154,873	9,656,502
2003	874,534	88,649,850	85,098	9,376,697
2004	612,896	85,267,923	513,063	12,813,765
2005	531,801	87,076,625	547,224	16,165,456

〈표 13〉 면세사업자 인원 및 수입금액 현황^{주1)}(계속)

(단위 : 백만원)

	신고대상자 ^{주2)}		자료과세자 ^{주3)}	
	납세자수	수입금액	납세자수	수입금액
2천4백만미만	236,928	1,748,482	351,545	4,504,585
2천4백만이상	69,605	2,387,007	129,334	4,256,139
4천8백만이상	18,595	993,203	18,768	999,638
6천만이상	15,324	1,006,725	11,575	757,418
7천2백만이상	27,155	2,314,182	14,582	1,229,050
1억이상	57,801	8,389,047	15,511	2,097,319
2억이상	68,485	2,1431,013	5,011	1,433,312
5억이상	23,816	1,6437,278	703	463,955
10억이상	9,446	12,855,381	157	202,290
20억이상	4,646	19,514,308	38	221,750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2006

주1) 2005년 귀속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 수입금액 신고를 기준으로 함

주2) 자료과세자 이외의 자

주3)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중 사업장 현황 신고를 하지 않고 국세청에서 과세자료를 수집하여 수입금액을 결정하는 사업자로서 보험모집인 등 인적 용역자, 우유, 복권, 우표, 수입인지 등을 판매하는 사업자.

특히 자료과세자 중에서도 2천4백만 원 이하의 수가 236,928명으로 신고대상자의 44.5%를 차지하여 면세사업자의 과반수 이상이 세금을 내지 않고 있다고 보아야할 것이다.

(3) 면세사업자의 신용카드 가맹자와 미가맹자의 1인당 수입금액(이명구, 2005, p.26)

아래의 표는 면세사업자의 신용카드 가맹자와 미가맹자와의 1인당 수입금액의 차이를 업종별로 나누어 본 것이다. <표 14>에서 보는 와 같이 신용카드가맹자 1인당 평균 수입금액이 2001년귀속 114백만 원, 2002년귀속 113백만 원, 2003년귀속 67백만 원이나 신용카드미가맹자 1인당 평균 수입금액은 2001년귀속 38백만 원, 2002년귀속 48백만 원, 2003년귀속 55백만 원으로 카드가맹자의 1인당 평균 수입금액이 카드미가맹자에 비하여 300% 내지 121.8%가 높은 현상을 나타내고 있다. 이 표에서 시사하는 것은 똑 같은 지역에서 동일한 규모의 사업장일지라도 신용카드 가맹점과 신용카드 미가맹점간에는 수입금액의 차이가 많이 난다는 것이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면세사업자도 신용카드 가맹을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표 14〉 신용카드가맹자와 미가맹자의 1인당 평균 수입금액 현황

-농·수·축·임산물 판매업-

(단위 : 명, 백만원, %)

종목	구분	2001년 귀속			2002년 귀속			2003년 귀속		
		인원	수입금액	1인당	인원	수입금액	1인당	인원	수입금액	1인당
계	가맹	530	60,376	114	500	56,675	113	835	55,687	67
	미가맹	460	17,444	38	337	16,270	48	304	16,760	55
곡물	가맹	47	11,553	246	43	5,966	139	36	3,418	95
	미가맹	79	3,327	42	52	2,769	53	40	1,996	50
채소	가맹	11	785	71	11	1,373	125	9	1,141	127
	미가맹	37	800	22	27	381	14	32	1,230	38
과일	가맹	12	502	67	13	764	59	9	415	46
	미가맹	13	193	15	12	305	25	10	659	66
생화	가맹	78	1,378	18	79	1,331	17	79	1,381	17
	미가맹	13	102	8	11	74	7	9	48	5
생선	가맹	4	95	24	6	222	37	5	164	33
	미가맹	11	664	60	9	747	83	14	1,832	131
기타 수산물	가맹	4	250	62	6	218	36	5	260	52
	미가맹	11	361	33	10	445	44	12	315	26
축산	가맹	247	29,980	121	222	28,645	129	446	28,489	64
	미가맹	197	10,206	52	146	10,384	71	128	9,307	73
서적	가맹	127	15,533	122	120	18,155	151	246	20,418	83
	미가맹	99	1,790	18	70	1,165	17	59	1,374	23

(4) 면세 사업자의 계산서 관리제도의 문제와 과표양성화 문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소득세법 제 163조 제 1항 제2 및 법인세법 제 121조 제 1항 제 2항). 다만 공급받는 자가 최종소비자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계산서 교부를 면제해주고 있으며 대신 영수증만 발행할 수 있다. 면세 사업자가 최종 소비자에게 발행 교부하는 영수증의 종류에는 일반 영수증,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영수증이 있는데 과세자료로서 이용할 수 있는 것은 현금영수증과 신용카드 영수증 밖에 없다.

(가)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의 제출에 관한 문제점

① 사업자는 (소득세법 제78조) 규정에 의한 기한 내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보는 것을 포함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다.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를 사업의 과세기간 종료 후 31일 이내에 신고하게 함으로써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자의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는 매분기 신고할 때마다 보고가 되는데 유독 면세사업자의 과세거래를 나타내는 계산서의 보고는 과세기간을 넘겨 보고하게 함으로써 계산서의 발행을 늦추고 연기하는 등의 납세의식과 자료 관리상의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나) 면세사업자의 과표양성화 방안

상기 <표 14>에서 면세사업자의 과세표준 신고에 대하여 신용카드 가맹점과 미가맹점의 과세표준 신고 실적의 차이를 보았다. 상기 표에서 처럼 과세표준 신고 실적의 차이가 이렇게 난다면 과세표준의 양성화 방안의 제일은 신용카드의 가맹을 독려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다. 소득세법상 기장의무 확대

(1) 소득세법상의 기장의무의 문제점

소득세법상 기장의무를 갖는 자는 사업자이다. 부가가치세는 소득금액을 계산하기 위한 수입금액을 결정하는 세금이기 때문에 소득세법상의 기장과는 매우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면 부가가치세법에서 사업자의 외형을 결정해주지 못한다면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근거를 잃게 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상의 기장과도 관련이 크다할 것이다. 소득세법에서 사업자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빙서류 등을 비치하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의하여 장부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소득세법 제160조①항).

소득세법에서 정한 기장의무제도에 대해서는 외형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다. 재무상태와 영업성적을 알 수 있도록 장부를 비치해야한다는 조항에 모순이 있을 수는 없다. 그러나 소득세법 제160조 제2항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 미만의 사업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간편장부(이하 “간편장부”라 한다)를 비치하고 그 사업에 관한 거래사실을 성실히 기재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를 비치·기장한 것으로 본다(소득세법 제160조②항).”라고 되어 있는데 이 조항이 문제다.

이 경우 농업, 수렵업, 임업, 어업, 광업, 도소매업 등은 3억원,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음식숙박업,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통신업, 금융 보험업, 창고업 등은 1억 5천만원, 부동산임대업, 사업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가사서비스업 등은 7천 5백만원인데 이 기준은 너무 완화된 기준이라고 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구분을 4천8백만원을 기준인 것에 비하면 소득세법은 매우 완화된 기준이라 말 할 수 있다.

(2) 부가가치세법상의 기장의무의 문제점

부가가치세법령 제79조 제2항의 간이과세자 기장에 관한 규정은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액을 합계한 공급대가를 기록할 수 있다” 또한 제3항을 보면 “간이과세자가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았거나

교부한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보관한 때에는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기장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로 되어 있다.

상기의 규정을 보면 세금계산서나 영수증을 보관만 하고 있어도 기장한 것으로 본다. 로 되어 있다. 그러나 이는 간이과세자의 지나친 보호가 아닌가 생각한다. 앞장에서도 설명하였지만 간이과세자도 자료 관리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출발한다면 아무리 영세한 사업자라도 기장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라. 납세의식 고취를 위한 중장기적인 홍보 및 교육프로그램 실행

(1) 국세청의 일반적인 홍보

국세청에서 기장의무에 대한 내용을 항상 홈페이지에 홍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2) 납세의식을 위한 조기교육실시, 전략

자발적인 납세의식을 갖기 위해서는 하루아침에 금방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루어 나가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어렸을 때 초등학교에서부터 납세의 신성함에 대해서 교육을 할 필요가 있고 모범성실 납세자가 사회적으로 우대받는 그러한 사회환경이 자연스럽게 조성 될 때에 국민들의 납세의식은 높아질 것이다.

(3) 납세의식과 현행 부가가치세법상의 부가가치세 표기문제 (박성배, 2005. pp.23~24)

현 부가가치세법 제6조를 보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의 합계액 (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라고 표기되어 있다.

즉, 공급가액 속에 부가가치세가 포함 안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최종 소비자에게 표시하는 가격을 공급가액만 제시하고 계산할 때 세금(부가가치세)을 따로 징수할 것이냐 혹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소비자에게 표시하여 그 값을 그대로 받느냐 하는 문제이다. 현재는 일반적으로 후자, 즉 부가가치세 포함하는 가격으로 소비자에게 제시를 하고 그 값을 그냥 받는 형태이다.

그러나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3-48-1 에서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이 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공급가액 속에 아무 말이 없을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모든 물품의 가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해야 한다.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구분표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대금을 지급하는 소비자는 대금 속에 세금이 얼마인지도 모르고 지불하며 또한 공급자인 사업자도 그 세금을 자기의 수입인줄 알고 처리한

다. 세금을 낼 시점에서야 아 그 세금이 납세자로 부터 징수하여 납부해야 할 세금이라는 것을 후에야 깨닫는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모든 물품대의 가격 속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고 별도로 계산한다는 원칙이 필요하고 그렇게 되면 물건을 소비할 때면 항상 소비자는 세금이 얼마인지를 생각하고 계산해야 하기 때문에 세금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리라 생각한다.

3. 수입금액 양성화 요인 정비

가. 현금거래의 노출 강화

(1) 수입금액 노출 강화를 위한 신용카드 확대적용

정부는 1999년부터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를 도입하는 등 최근 소비자들에게 신용카드 사용 활성화 정책을 시행하고 있어 신용카드 사용 거래가 급격하게 늘어났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전통적으로 상거래에서 현금거래 비중이 높아 자영업자의 과표를 양성화하는 데 근본적으로 한계가 있어 왔다. 이로 인하여 원천징수제도를 실시하는 봉급생활자와 자영업자간의 세부담의 불형평성 문제를 초래하고 있어 근로소득자들의 불만이 높은 실정이다.

우리나라는 아직도 총민간소비지출 중에서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2004년말 현재 41.7%⁸⁾, 현금사용비중은 58.3%로 현금거래비중이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자영업자의 과표를 정확히 알 수 없기 때문에 세원을 포착하는 데 한계가 있다.

결국 정부는 현금거래비중이 높은 점과 세원포착의 어려움을 인식하고 세원의 투명화와 형평과세를 방법의 하나로써 현금영수증제도를 2005년 부터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현금영수증제도는 국민들의 인식부족과 일부 자영업자들의 영수증 발급 기피현상 등으로 문제점을 나타내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수입금액 양성화를 위한 조치의 1단계로 신용카드의 활성화를 좀더 확대 할 필요가 있다. <표 1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신용카드의 사용 비율은 41.7%, 현금거래의 비율은 58.3%로 현금 거래의 비율이 신용카드의 비율보다 높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신용카드의 사용비율을 현재보다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현금수입업소인 유흥음식점, 또는 전기, 전자제품, 식물거래제품 등 소위 유통과정이 문란한 업종의 경우는 신용카드의 변칙거래를 통하여 거래질서를 무너뜨리고 있기 때문에 이들을 철저히 단속함으로써 변칙거래를 막아야 한다. 국세청의 내부자료를 살펴보면 신용카드 가맹사업자를 확장하는 것은 한계가 왔다고 보이지만 아직도 신용카드의 건전한 사용을 확대하는 정책을 지속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폐지된 신용카드 복권제도를 부활하여 현금카드 보상제도와 같이 실시함이 타당하리라 생각한다.

7) 신용카드 사용 활성화를 위해 사용금액에 대한 연말정산 근로소득공제(1999.9), 영수증복권제도(2000) 등을 실시하고 있다.

8) 2004년 말 현재 민간소비지출 중에서 현금거래비중은 58.3%를 차지한다.

〈표 15〉 민간소비지출 대비 신용카드 사용금액 및 현금거래비중

(단위 : 조원, %)

	민간최종 소비지출	카드사용		현금거래	
		금액	비율	금액	비율
1998	238.8	30.8	12.9	208.0	87.1
1999	274.9	42.6	15.5	232.3	84.5
2000	312.3	77.9	24.9	234.4	75.1
2001	343.4	135.3	39.4	208.1	60.6
2002	381.0	174.0	45.7	207.0	54.3
2003	388.2	170.5	43.9	217.7	56.1
2004	400.7	167.1	41.7	233.6	58.3

주1) 카드사용금액은 현금서비스와 구매전용카드 제외
 국세청, 현금영수증제도 관련자료 국회 예산정책처 제출자료, 2005. 3
 한국여신금융협회, 신용카드 업계현황, 2004. 12.

(2) 신용카드 활성화의 문제점

(가) 신용카드 변칙거래

현금수입업소인 유흥음식업소 또는 전기·전자제품, 직물제품 등 유통과정이 문란한 업종의 경우에는 소비자들에게 무기명으로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행하고 카드할인업소(위장신용가맹점)를 통하여 일정수수료를 지불하고 할인한다.

이와 같이 이것을 처리해 주는 카드 할인업소는 일정기간만 존재했다 사라지는 유령업체 이므로 폐업자의 이름을 빌려서 하는 경우가 있고, 무재산자의 명의를 빌리는 경우 등 여러 가지 수법으로 일정기간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대량처리 하고 일선 세무서에서 신용카드자료의 처리 직전에 사라지기도 한다.

사실 이런 유령업소를 운영하는 자를 추적해서 검찰에 고발조치 할지라도 대부분 가벼운 벌금형만 받고 풀려나고 있는 실정이며, 또한 심도 있는 추적조사를 해서 과세를 할지라도 미리 재산을 도피시킨 후이므로 행정력만 낭비한 채 결국에는 결손 처리 분을 할 수밖에 없는 사례가 많다.

(나) 가맹점의 위장 카드 매출

최근 일부 신용카드가맹사업자가 신용카드제도를 악용하여 실제로는 신용카드에 의한 매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장으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작성하여 금융기관에서 받는 카드대금으로 불법유통, 부정대출 등을 하면서 위장매출분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도 자료상으로부터 허위로 수취하는 등 큰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다) 신용카드거래의 노출로 인한 현금 선호

현금매출 신고의 경우 검증기능이 별로 없이 대부분 납세자의 자진신고에 의존하게 되고, 신용카드 매출 분은 100% 노출되어 전액 고지결정 되므로 상대적으로 신용카드 매출분의 세 부담이 무겁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신용카드 매출은 차후에라도 신용카드자료 전산출력 등으로 인하여 전액 노출되거나 현금매출은 납세자의 임의에 의하여 자진신고 하는 것이 현실이므로 탈세의 여지가 많다.

그러므로, 신용카드 가맹업소는 실소비자로 하여금 현금계산을 유도한다. 따라서 실명거래가 정착되고 세무행정이 과학화, 선진화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라도 신용카드 거래의 기반조성은 필요한 것이다. 그러나 신용카드거래가 현금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원시 되고 있는 우리 사회의 현실로 말미암아 세금부담의 불공평이 초래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신용카드의 불법거래를 막는 방법은 이러한 일이 발생해서 적발되었을 때에는 엄중한 벌을 내려서 예방할 수 밖에 없지 않나 생각한다. 또한 현금영수증제도를 활성화하여 신용카드제도의 단점을 보완하여야할 것이다.

(3) 수입금액 노출 강화를 위한 현금카드 확대장려

정부가 현금영수증제도를 도입한 이유는 2002년 총 민간소비지출 중 현금사용비율이 51.5%의 높은 비중으로 나타난 데다, 거래내용이 잘 나타나지 않는 자영업자 등의 현금거래를 자동적으로 노출되도록 하여 과세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함이다.

또한 이 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현금 영수증을 발행하여 과세자료의 양성화에 기여하는 사업자에게도 신용카드 등의 발행과 같은 세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현재 국세청에서 주관하고 있는 현금영수증 제도가 일정한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여기에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즉, 현금영수증제도가 세부담 불균형 해소뿐만 아니라, 음성거래를 차단하여 사회 전반의 투명성을 크게 제고시킬 수 있는 제도이지만 소비자, 자영업자 등 국민 모두가 성숙한 시민의식을 가지고 현금영수증 주고받기를 생활화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성과를 거둘 수가 없다는 것이다. 아무리 현금영수증 단말기를 의무적으로 달게 하고 독려를 하여도 그것을 이용하는 사업자, 특히 자영업자 같은 경우 현금 영수증 발행을 기피하거나 소비자가 현금영수증을 요구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의 효과를 볼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직접 현금으로 결제되는 현금카드시스템을 이용하여 직접 국세청에 보고가 되면 굳이 소비자가 현금영수증을 요구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의 효과가 발생하게 됨으로 현금영수증제도의 홍보는 물론 사회제도적으로 현금카드시스템의 활성화를 기하게 되어 바람직하다 할 것이다.

(4) 수입금액 노출 강화를 위한 전자화폐 카드의 확대장려

전자화폐카드를 발급받은 고객은 예금이나 현금으로 다시 환원되지 않는 한 전자화폐카드에 저장된 가치들은 상호간에 마치 화폐처럼 이용될 수 있다. 또한 이것이 전자상으로 기록이 남기 때문에 과세소득 파악에 신용카드나 현금카드와 다를 바가 없다.

우리나라는 1990년대 중반에 은행 공동의 전자화폐를 개발하기 시작하였고 2007년 1월 1일부터 『전자금융거래법』이 시행됨으로서 앞으로는 전자화폐가 매우 활성화되리라 생각한다. 여기서 전자화폐가 성공한 사례를 살펴보면 우선, 싱가포르의 세계에서 유래를 찾기 힘들 정도로 전자화폐가 활성화된 나라로 꼽히는데, 1996년 11월부터 서비스를 시작한 IC카드형 전자화폐인 CashCard의 경우 2003년 11월 기준으로 약 1,100만 장의 카드가 발급되어 있고 2002년 기준으로 월평균 약 1,000만 건 정도의 거래가 이루어진다고 한다. CashCard가 이렇게 활성화된 이유는 싱가포르 곳곳에 설치된 통행료 자동징수시스템(Electronic Road Pricing)에서 의무적으로 CashCard를 이용토록 한 정부 정책이 가장 큰 요인이었다고 한다(오은숙, 2004).

싱가포르의 CashCard의 전자화폐 성공사례로 분류한다면 교통카드 이용이 활성화된 우리나라도 전자화폐가 성공한 국가 중 하나로 간주될 수 있을 것이다(장병환, 2006, pp.20~22).

(5)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및 직불카드에 대한 소득공제율 확대

현금영수증 발급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사회제도적인 시스템 구축도 중요하지만 현금영수증의 특성상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으면 현금영수증은 대부분 날라가 버리기 때문에 이에 대한 좀 더 적극적인 특혜가 필요하다. 또한 신용카드에 대해서도 좀 더 적극적인 대책으로 신용카드에 대한 세액공제율 20%정도로 확대 해야 한다.

현재 근로자에게는 이용금액에 따라 총급여액 15% 초과사용액의 15%를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고 가맹점에 대해서는 매출액의 1%를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공제해 주고 있다.

이 때 공제 대상이 되는 카드사용자에게는 근로자 본인 이외에도 연간소득이 100만원 이하인 배우자나 직계존비속도 모두 포함된다. 그러나 근로소득 특별공제의 대상이 되는 보험료나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기부금 및 결혼, 장례, 이사비용 등은 신용카드사용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여기서 공제율을 인상해야 되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급여를 지급하였을 경우를 예를 들어 살펴본다.

〈표 16〉 급여수준별 소득공제 내역

연 급여	4천만원	6천만원	8천만원	1억원
카드사용액A	16,000,000	24,000,000	32,000,000	40,000,000
급여액의 15%B	6,000,000	9,000,000	12,000,000	15,000,000
15%초과C(A-B)	10,000,000	15,000,000	20,000,000	25,000,000
D=C×15%(소득공제액)	1,500,000	2,250,000	3,000,000	3,750,000
E=C×20%	2,000,000	3,000,000	4,000,000	5,000,000

* 카드사용액은 급여의 40%를 사용한 것으로 전제하였다

상기의 <표 16>는 급여수준별로 현행 법 대로 소득공제액을 계산해 본 것이다. D는 현행법상의 공제액이고 E는 공제율을 20%로 인상한 경우이다. 20%를 인상하였을 경우 500만 원 한도에 걸리는 급여 수준은 1억 원이다. 급여수준이 1억 원이 넘어가면 500만 원 한도에 걸려 더 이상은 공제가 안 되는데 근로자의 급여수준이 1억 원 정도라면 중산층의 급여수준이라 볼 수 있다. 그러므로 1억 원을 기준으로 한도액 까지 공제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나. 세금계산서 발행제도의 개선 및 관리 강화

(1) 간이과세자의 매출세금계산서 발행의무화

현재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다.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는 이유는 영세하기 때문에 일반과세자와는 달리 세무관리가 될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가장 큰 이유는 자료 관리에 문제를 들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간이과세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으므로 인하여 일반과세자는 간이과세자와 거래를 할 수 없다. 왜냐하면 현재 5만 원 이상의 거래에 대하여는 정규영수증을 발행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간이과세자가 신용카드 단말기를 보유해야 한다는 규정도 없으니 문제가 있다. 일반과세자가 정규의 영수증을 수취하기 위해서는 간이과세자와 거래를 할 수 없으니 간이과세자는 외형이 늘어나기가 어렵고 자료에 대한 관리를 아니 하니 마 음대로 탈세를 하여도 알아낼 방도도 없는 것이다.

또한 간이과세자가 타처에서 물품을 구매하거나 용역의 대가를 지급할 때에도 반드시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아야한다는 의무가 없다.

그렇지만 간이과세자도 매입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과세기간 중에 받은 매입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매출전표에 대한 보고를 해야 세제상의 혜택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아무리 영세한 사업자라도 자료에 대한 약간의 관리는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다. 간이과세자의 산출세액 계산은 공급가액(매출액)×업종별 부가가치율 × 10% - 매입세금계산서⁹⁾ 세액공제를 하여 산출한다.

여기서 2005년도 간이과세자의 매입세액 공제상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17>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현황(2005년 제1기-2기)

(단위 : 명, 백만 원)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			가산세	공제세액	차감납부세액	환급세액
	신고인원 ^{주1)}	과세표준	세액				
합계	1,603,117	24,127,584	772,336	195	316,427	456,128	25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2006, p.320-321 재정리

주1) 신고인원의 합계는 2005년 제2기 확정신고 인원임

9) 여기서 매입세금계산서란 간이과세자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매출영수증을 말한다.

상기의 표는 간이과세자의 업태별 부가가치세 신고사항 중 합계란만을 요약한 것이다. 상기의 표에서 간이과세자의 공제세액은 납부세액의 41%(316,427/772,336)로 납부세액의 거의 절반이 세액공제로 나가고 있다. 이것은 아무리 영세한 간이사업자라고 하더라도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나름대로의 자료 관리는 한다고 보아야할 것이다.

또한 차감납부세액은 과세표준의 1.89%(456,128/24,127,584)수준이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업종별 부가가치율이 최소 20%에서 40%까지를 감안한다면 매우 낮은 세금을 부담하고 있으며 이는 일반과세자와의 형평에도 문제가 있다고 본다.

(2) 간이과세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을 경우 문제점

간이과세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을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생각할 수 있다.

첫째,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아간 매입자 측에서는 매입세액 10%의 공제를 받지만 간이과세자는 부가율의 10%에 매입세금계산서세액공제를 한 후 납부세액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는 세법상 익금불산입이라는 원칙이 무시되고 매입세공제와 매출세액이 서로 일치되지 않는 모순이 있다. 그러나 간이과세자는 여차피 공급가액을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가격으로 보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다고 본다.

둘째, 간이과세자가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을 경우 세금계산서의 관리가 어렵다.

가뜩이나 영세한 업자인데 세금계산서의 발행과 관리를 제대로 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다. 그 많은 간이과세자가 자료 관리를 잘못하면 행정비용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예상은 누구나 할 수 있다. 그러나 간이과세자가 매입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매입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해야 하는데 이와 같이 매출에 대해서도 같은 방법으로 하면 될 수 있을 것이다. 간이과세자가 매출세금계산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그리 많지는 않을 것이며 이렇게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부터 많은 거래를 할 때 간이과세자는 신속하게 일반과세자로 전환할 수 있을 것이다.

4. 기장이익 요인(무기장불이익 요인)정비

여기서는 사업자의 사업규모가 작은 기업들이 기업에서 회계장부를 기록할 인원이 부족하다던가 기장능력이 없어서 기장을 하지 못할 때 어떻게 하면 이들을 기장을 통하여 정당한 납세의무를 다하게하고 공평한 과세를 이루느냐하는 문제이다. 장부를 기장하는 것이 사업자 스스로 유리하다고 인식될 수 있도록 제반 시스템을 구축하고 기장여부를 각종 조세지원제도나 금융거래와 연계함으로써 사업자는 반드시 기장을 하여야한다는 인식을 갖게 할 필요가 있다.

가. 기장세액공제 확대

전반적인 기장확대와 소규모사업자의 기장유도를 위해서는 기장에 소요되는 비용 일부를 보전해주는 제도가 필요한데 그 비용을 보전해 주는 방법이 문제이고 이러한 문제를 지원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기장세액공제가 아닌가 생각한다.

현재 기장세액공제는 산출세액의 10%를 100만 원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 해주고 있으나 산출세액이 적은 소규모 사업자 등에 대해서는 기장유도 효과가 미흡하다. 그러므로 기장세액공제율을 20%~30%로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단, 한도는 100만 원으로 현재의 규정을 유지한다.

이렇게 올려야 하는 이유를 살펴보면 영세사업자가 100만원 한도의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산출세액이 1,000만원이 되어야하는데 산출세액 1,000만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소득금액이 약 8,000천만 원은 되어야 하고 소득이 8,000만 원이 되기 위해서는 부가가치율 10%만 보아도 8억 원의 외형이 되어야한다는 결론이 나온다. 외형 8억 원은 복식장부의무자로 이미 기장을 하고 있는 사업자이다. 그러므로 기장세액 한도 100만 원이라는 것은 매우 형식적인 조항으로 기장세액 공제를 산출세액의 20~30%까지 하여 영세사업자의 기장유인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나. 무기장가산세 강화

(1) 간이과세자에 대한 가산세 부과

소득세법 제81조 제10항의 가산세 조항을 살펴보면 사업자가 제160조 및 제161조의 규정에 의한 장부를 비치·기장하지 아니하였거나 비치·기장한 장부에 의한 소득금액이 기장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때에는 종합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에 대하여 그 기장하지 아니한 당해 소득금액 또는 기장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당해 소득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라고 되어 있다. 그러나 대통령이 정하는 소규모 사업자는 가산세를 제외한다고 하였는데 여기서 제81조제10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규모 사업자(소득세법 시행령 제147조의3의①항)”라 함은 당해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와 직전 과세기간의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 및 산림소득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결정에 의하여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4천800만 원에 미달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라고 되어 있어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는 기장을 하지 아니하여도 가산세가 없으니 기장에 대한 관심을 가질 이유가 없다. 사업자는 최소한 물품의 판매가액이나 매입하는 원가와 기타 지출항목에 대한 증빙을 세무대리인에게 위탁하면 모든 기장이 해결 될 수 있는데 영세해서 기장을 못한다는 그 사유를 정책당국에서는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1억 원을 매출하고도 4,790만 원으로 신고하면 발각될 수 있는 확률은 거의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4,800만 원 이하 자에게도 최소한도의 기장의무를 부여하고 이에 대한 가산세를 적용하게 함으로서 기장확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2) 소득세법상의 기장의무 기준 하향 조정

소득세법(소득세법 제160조②항)상 기장의무를 살펴보면 농업, 수렵업, 임업, 어업, 광업, 도소매업은 3억 원,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음식숙박업,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통신업, 금융 보험업, 창고업은 1억 5천만 원, 부동산임대업, 사업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사회 및 개인 서비스업, 가사서비스업은 7,5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부가가치세법의 사업자의 유형과 너무나 상

이하에 이를 조정하여야 할 것이다. 즉, 부가가치세법의 간이과세자(년4,800만 원 이하)로 소득세법의 기준을 내리고 간이과세자도 간편장부를 하도록 하여 간편장부를 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가산세를 적용하자는 것이다.

2007년 1월부터 전문직사업자에 대해서는 수입규모에 상관없이 복식부기의무를 부여한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라 볼 수 있다.

(3) 매출규모에 따른 무기장가산세 차등 적용

현재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의 계산은 사업자가 기장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소득금액이 기장누락 되었을 때 가산세를 부과한다. 가산세의 계산 방식을 보면 산출세액×미기장소득금액/소득금액×20%로 되어 있다.

상기의 공식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가산세의 금액이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일견 외형의 비례대로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여기서 주장하고 싶은 것은 매출액이 큰 기업일수록 가산세율을 차등 적용하자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기업의 규모가 클수록 기장누락에 대한 관심이 커질 것이고 이렇게 가산세가 불리함으로 인하여 기장을 유도하는 결과가 될 것이다.

다. 성실기장신고자에 대한 현실적인 혜택 부여

(1) 성실납세자 우대혜택의 확대

훈장을 받는 성실납세자의 경우, 납세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이라 볼 수 있는 것은 수상일로부터 2년간 세무조사 면제이다.

기타 전국세무관서 민원봉사실의 전용 창구 이용, 징수유예·납기 연장 시 납세담보완화 등의 혜택 등은 혜택이라고도 볼 수 없는 것이다. 매우 비현실적인 대우이다. 그러므로 금탑산업훈장 등 대기업에 주는 성실납세자 상은 그대로 놓아둘지라도 소규모 영세사업자들에게는 1%라도 납세혜택을 주는 방향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2) 성실기장신고자의 판단기준의 홍보

소규모 사업자도 어떻게 하면 성실납세자가 될 수 있다는 기준을 최소한도 알려야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납세자가 아무도 모르는 기준에 의해서 선정되는 성실납세자는 성실납세자를 양산할 수 없다. 납세자가 기준을 모르기 때문에 그 방향으로 노력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성실납세자가 되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을 공시하면 납세자들은 그 방향으로 노력을 할 수 있고 내가 왜 성실신고 납세자가 될 수 없는가의 판단도 가능하리라 본다.

(3) 납세자가 「성실기장신고자」로 지정을 요청하는 제도 마련

상기에서 성실신고의 최소한도 기준을 마련하게 되면 스스로 성실기장신고자인지의 판단이 설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지정 요청제가 있을 경우에는 성실기장신고자로 신청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성실신고납세자로 지정이 되면 세무조사는 물론이지만 세액 감면 혜택을 일반 소상공자와

구별을 하고 특히 국영기업체나 국가와의 거래 시 일정 가산점을 주어 기장을 함으로써 유익이 크다고 생각하면 외형이 아무리 적어도 기장을 함으로써 기장확대의 유인책이 될 것이다.

라. 재무제표의 필수 요건화

기업의 규모가 일정수준 이상인 경우에는 신용평가를 하여 대출을 하는 경우도 많다. 그러나 소규모 기업에 대해서는 거의 그러한 대출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것은 사업자가 장부를 하지 않아도 되고 은행도 구태어 신빙성 없는 장부를 보느니 차라리 개인의 능력을 보고 대출을 하는 것이 편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회 제도적으로 은행에서 아무리 적은 기업이라도 재무제표를 요구하게 되면 그 사업자는 장부를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미국의 중소기업과 한국의 중소기업자들에게 회계감사의 필요성을 물었을 때 한국의 기업들은 거의 회계감사가 필요없다고 답변을 했고 미국의 중소기업들은 대부분 회계감사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그 이유를 물으니 미국기업은 은행의 대출을 할 때 은행에서 재무제표를 요구하기 때문에 그 재무제표가 진실된 재무제표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회계감사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중소기업들은 회계감사가 필요없다고 대답을 하였는데 그것은 은행이 대출을 할 때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굳이 회계감사를 받을 필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성배 · 김완희, 2000, p355).

5. 세무전문가의 적극적인 활용

가. 세무사의 현황

다음 자료는 세무사회로부터 받은 2007년 2월 현재 세무사의 현황이다.

(1) 지방회별 현황

〈표 18〉 세무사 지방회별 현황

	총회원수	휴업회원	개업회원	개업회원(%)
합계	7,511(380)	238(23)	7,273(357)	100.0%
서울	3,434(185)	148(11)	3,286(174)	46.2%
중부	1,762(91)	35(8)	1,727(83)	23.7%
부산	1,014(43)	28(3)	986(40)	13.6%
대구	495(16)	6(0)	489(16)	6.7%
광주	408(21)	120()	396(21)	5.5%
대전	398(24)	9(1)	389(23)	5.3%

* ()는 여성세무사 현황

(2) 자격별 현황

〈표 19〉 자격별 현황

구분	시험합격자	과목면제자	국세경력자	석·박사	공인회계사	변호사	기타	합계
인원	3,006	3027	951	269	203	40	15	7,511
비율	40.0	40.3	12.7	3.6	2.7	0.5	0.2	100.0

(3) 세무법인 현황

〈표 20〉 세무법인 현황

지방회	설치수	구성원
서울지방회	97	611
중부지방회	19	101
부산지방회	12	68
대구지방회	3	16
광주지방회	1	5
대전지방회	—	
합 계	132	801

나. 세무전문가의 활용방법

상기의 가, 현황표에서 2007년 2월 현재의 현황을 보면 세무사의 총 인원은 7,511명이다. 그 중 휴업회원 261명을 제외하면 개업회원은 7,250명이다. 우리나라 사업자 추계인원이 약 98만 정도 되는데 이들을 기장사업자로 유도하는 것이 앞으로 공평과세를 위한 목표이다. 추계과세사업자가 있는 한 과세형평이란 이를 수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들을 세무전문가 입장에서 기장사업자로 유도할 방법을 모색해 보아야 한다. 지금까지의 국가의 기장정책을 보면 납세자가 알아서 일정기준이 되면 거기에 맞는 장부(즉 복식장부 혹은 간편장부 등)를 하도록 하고 있다. 복식장부 의무자가 되면 국가에서 통보의무도 있으니 그 통보를 받고 장부를 할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은 사업자들이 알아서 장부를 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하기에 외형이 많아 세금에 대한 어려움이 눈앞에 닥아온 사업자라면 당연히 장부기장에 대한 관심이 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그 이하의 사업자들에게는 장부의 개념이 없는 사업자들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것이며 바로 세무전문가들을 통하여 기장확대를 위한 노력도 이들을 대상으로 해야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본인은 여기서 세무전문가를 활용하기 위한 다음 몇 가지 사항을 제시하고자 한다.

(1) 한국세무사회 차원의 홍보 마케팅

우리나라도 기장을 어떻게 하며 어떤 방법으로 하는가를 홈페이지에 제시하는 일을 한국세무사회에서 실시하면 좋을 것이다.

이것은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홍보라 볼 수 있는데 이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젊은 이들이 세무사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홈페이지를 방문했을 때 읽어 봄으로서 광고 효과를 보자는 것인데 현실적으로는 오프라인에서의 홍보가 더 중요하리라 본다. 오프라인에서는 매체를 통하여 기장사업에 대하여 세무사회가 주관하고 있다는 공식성 광고를 통하여 영세사업자가 장부에 대한 인식을 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장세액공제를 대폭 확대한 후에 기장에 대한 이익이 기장을 알했을 때 보다 확실히 유리하다는 점을 부각시키면서 납세자들에게 다가 간다면 머지 않아 장부에 대한 인식이 달라질 것이고 이로 인하여 간이과세제도를 폐지하는 단초도 될 수 있을 것이다.

(2) 세무협력단체를 통한 세무전문가의 활용

우리나라 세정당국은 납세에 관한 홍보, 지도, 상담, 신고를 집단관리하여 행정능률의 향상을 도모함과 동시에 세정에 대한 사업자의 자율적 참여를 확대하고 성실한 자율신고납부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세무협력단체를 결성·관리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부가가치세 사무처리규정 제35조).

이러한 단체에 가입되어 있는 납세자들은 집단적으로 세무지도를 받게 한다.

V. 결 론

요즈음의 대부분의 세금은 신고납부제도로 납세자가 세금을 신고할 때에는 정확히 세금을 신고했다는 근거가 필요하다.

특히 우리나라 소규모 사업자들의 신고 행태를 보면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근거 없이 추계 신고 하는 인원의 비율이 46.4%로 개인사업자의 거의 반수가 아무 근거 없이 신고를 하고 있는 형편이다.

장부를 비치하여 정확한 기록을 유지하고 이에 근거하여 성실한 납세를 한다는 것은 바로 사회의 정의를 세우며 국가의 재정을 튼튼히 하는 가장 기본이 되는 조치일 것이다. 또한 납세자는 가능한 한 세금을 적게 내려고 하는 속성이 있기 때문에 모든 소득에 대하여 예외 없이 적정하게 세금을 부과하려 하는 과세당국과는 근본적으로 상충되는 문제점이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납세자의 소득을 계산할 수 있는 근거로서 장부기장을 유도하지 않을 수 없다.

본 연구에서는 기장확대 방안으로 다음의 5가지를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소상공인의 세무관리를 통한 확대방안이다.

즉, 소상공인의 사업자들의 납세의식을 강화하며 아울러 투명한 경제 환경 조성 및 지하경제의 양성화를 기하기 위하여 국민들의 납세의식을 고취시킨다.

둘째, 세무제도적 요인의 정비이다.

가)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에게 실제기록을 유지하게 하고 간이과세자에게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게 한다.

나) 면세사업자의 과세표준 양성화를 위하여 신용카드의 가맹을 독려한다.

다) 소득세법상 일정규모미만의 사업자에 대한 간편장부 기준은 부가가치세법의 경우에 비하여 매우 완만한 기준이므로 강화시키도록 한다.

라) 국민들의 납세의식 고취를 위한 국세청 홍보를 강화한다.

마) 현행 부가가치세법상의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표기하여 시행한다.

셋째, 과세표준 양성화를 통한 확대방안이다.

가) 수입금액의 양성화를 위해서는 현금거래의 노출을 강화해야 한다.

나) 수입금액노출 강화를 위하여 전자화폐카드 사용을 확대 장려해야 한다.

다) 현금영수증 및 직불카드에 대한 소득공제를 확대해야 한다.

라) 생활영수증 보상금 운영규정을 개선하여야 한다. 주 보상금 인원을 0.10%까지 상향하 5만원 등급을 대폭 늘려 누구나 1년 정도에 1건은 당첨 된다는 기대감을 갖도록 보상금을 하향 조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여 국민들의 관심을 고양시켜야 한다.

넷째, 기장 사업자에 대한 혜택을 통한 확대방안이다.

가) 기장세액 공제율을 20%~30%로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행 기장세액 한도 100만원은 매우 현실적인 조항이므로 기장유도효과가 미흡하기 때문이다.

나) 무기장가산세를 강화한다. 소득세법상의 기장의무 기준을 하향조정하고 매출규모에 따라 무기장가산세를 차등 적용하여야 한다. 또한 성실기장신고자에 대한 현실적인 혜택을 부여하기 위하여 성실납세자 우대혜택을 확대하고 성실기장신고자의 판단기준을 홍보하여 납세자가 「성실기장신고자」로 지정을 요청하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다) 재무제표를 필수 요건화 시킨다. 사회제도적으로 은행에서 소규모기업이라도 재무제표를 요구하게 되면 그 사업자는 장부를 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다섯째, 세무대리인을 활용한다.

가) 오프라인에서는 매체를 통하여 기장사업에 대하여 공익성 광고를 통하여 영세사업자가 장부에 대한 인식을 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장세액공제를 대폭 확대한 후에 기장에 대한 이익이 기장을 아니 하였을 때 보다 확실히 유리하다는 점을 부각시키면서 납세자들에게 다가 간다면 머지않아 장부에 대한 인식이 달라질 것이고 이로 인하여 간이과세제도를 폐지하는 단초도 될 수 있을 것이다.

나) 납세단체에 가입하고 있는 납세자들은 우선 복식장부의무자로 지정하여 세무전문가의 지도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면 기장확대는 더 늘어날 것이다. 그리고 납세자 단체를 결성 할 때 어느 상가나 시장이라면 그 지역의 모든 사업자들은 모두 가입 하도록 하여 집단지도를 받으면 한층 더 효과적일 것이다.

본 논문은 소규모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기장확대방안의 국한되어 있어 한계점을 지니고 있다. 향후 연구대상을 확장시켜 성실한 기장의 납세환경을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되는 연구를 지속적으로 진행하고자 한다.

참고문헌

- 국세청. 통계연보. 각 년도.
- 권영도. 1994. “납세자의 조세공평성 인식에 관한 실증적 연구”, 원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권혁세. 2007. 1. 22. “간이과세자 인위적 폐지 옳지 않다.” 조세일보.
- 김완일. 2005. 「부가가치세법의 이해와 실무」. (주)영화조세통합.
- 김유찬. 2004. 6. 「주요국의 조세제도 (독일편)」. 한국조세연구원.
- 김재진. 2003. 12. “자영업자의 과표 양성화에 관한 연구”. 한국조세연구원.
- 박동수. 2000. “소상공인 경영의 연구명제 탐색”. 영남대학교 경영대학원논총. 제17집.
- 박성배. 2005. 8. “부가가치세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한국공인회계사회.
- 박성배 · 김완희. 2000. 11. “한 · 미중소기업의 회계감사필요성에 관한 연구” 세무와 회계저널. 한국세무학회.
- 박춘엽 · 조규호. 2005. “소상공업 문제의 진단과 대안,” 소상공인창업 경영학술대회.
- 배득중. 1999. 「신재무행정 좋은 예산을 찾아서」. 서울, 박영사.
- 서희열외 2인. 2006. “사업자 단체지원 활용을 통한 세원관리연구” 「세무회계와 저널」. 한국세무학회. 제7권 2호.
- 안창남. 2004. 06. 주요국의 조세제도 (프랑스편) , 한국 조세연구원.
- 오기수 · 임중은. 어울림, 2006. 부가가치세법 강의 .
- 오은숙. 2004. 3. “싱가포르의 전자화폐와 모바일 지급결제 현황”. 「지급결제와 정보기술」 16호.
- 이명구. 2005. 5. “부가가치세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과 면세사업자의 수입금액 현실화 방안 연구” 경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용운. 1996. “한국 근로자의 임금만족 결정요인에 관한 실증적 연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박사학위 논문.
- 임주형 · 정영현. 1995. 무자료거래 근절을 위한 정책과제,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 정덕주.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세무학연구」, 2005.
- 장병환. 2006. 4. “카드기반 지급결제수단의 이용현황 및 전망”. 한국경제연구원 「지급결제와 정보기술」.
- 정정길. 2000. 「재정학의 새로운 이해」, 서울 : 대명출판사.
- 최명근. 2006. 「세법학총론」. 세경사.
- 홍성경. 2002. 12. “신용카드활성화가 세부담 증가 및 의제매입세액공제에 미치는 영향”. 경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岸英人.平成18年.『圖解所得稅』大藏財務協會,
- [http : //www.irs.gov/businesses/small/article/0,,id=98575,00.html](http://www.irs.gov/businesses/small/article/0,,id=98575,00.html)

A Study on Measures to Popularize Book-keeping among Minor Businessmen

Duck-joo Jeong* · Sungbae Park**

〈Abstract〉

The corporation tax, income tax and value-added tax (VAT), all classifiable under the 'self-assessment system', may be said to be the mainstream in the current Korean tax system. Under the 'self-assessment system', tax payers are allowed to determine themselves the amount of tax to pay, for which nothing seems more important than the taxpayers' will for voluntary compliance. The taxpayers' will for compliance in this context means their willingness to compute tax exactly in the prescribed way. Only when taxpayers calculate their tax amount on the basis of book entry which is most fundamental for this system, it is then plausible to expect the current 'self-assessment system' or fair taxation as a whole to go successfully. In order to secure such fairness in taxation, it is preemptive to have complete information about all transactions and incomes of taxpayers. In case of wage earners, all sources of their income are laid bare without reserve, while the incomes of the self-employed are not fully monitored, because most of them do not keep accounts that should normally serve as basis for examining incomes. It will be quite impossible to look forward to fairness in taxation vertically as well as horizontally on such fragile ground.

In a bid to deal with this situation, it is imperative to recommend taxpayers to maintain accounts of their transactions to enable them to offer the basis for computing tax amount to pay. The present paper aims to join efforts to improve the tax politics by mainly exploring measures to spread book-keeping among self-employed businessmen.

This study builds up its theory for finding means to generalize bookkeeping among operators of small scale business. For this purpose, research is made first concerning obligations for taxpayers to keep books as stipulated in the Korean tax laws such as the Basic National Tax Act, Value-added Tax Act, Income Tax Act, Corporation Tax Act, etc., and then five suggestions are made as approaches to generalize bookkeeping as follows :

First, extensive support should be provided for operators of small-sized business and measures must be worked out to create transparent environment for economic activities and to bring the underground economy to light;

Second, measures are suggested to streamline simplified taxation system pursuant to the Value-added Tax Act and to tighten the requirements to receive tax reduction. Moreover, it is suggested

* Professor, Department of Computing Tax Accounting, Sohae College

** Professor, Business Accounting Department in Kyungwon University

to expand the scope of obligations to keep books as stipulated in the Income Tax Act and to intensify the programs for public relation and education to promote consciousness of tax payment;

Third, it is sought after to lay bare as much amount of cash transaction as possible and suggested to widen the scope of approved expenditures against evidence. Besides, it is tried to improve or strictly control issuance of tax invoice;

Fourth, emphasis is placed on expanding the scope of tax exemption for bookkeeping and increasing penalty tax for omission or non-entry in an effort to offer more advantages on realistic base to those who declare booked accounts faithfully. It is also considered to oblige taxpayers to submit financial statements to the bank when opening or making accounts with it; and

Fifth, as a measure to utilize tax agency in a try to lessen difficulties facing minor businessmen, it is discussed to establish measures to popularize bookkeeping by way of tax agents.

<Key words> self-assessment system, popularization of book-keeping, minor businessmen, corporation tax law, income tax law, value-added tax law